

- (4)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에 의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함
- (5) 각 기관에서는 겸직허가 대장을 비치·관리
- 차) 횟수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함
- 3) 「청탁금지법」 제10조에 의한 외부강의등의 신고 [경기도교육청 감사관-2971(2025. 2.18.)]
- 가) 외부강의등의 범위
- (1) '외부강의등'이란 공무원 자신의 직무과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을 의미(발표, 심사, 평가, 자문, 의결 등의 행위를 포함)

#### ■ '외부강의등'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- ☞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은 강의·강연·기고
- ☞ 사회자와의 개별 방송 인터뷰에 응하는 경우
- ☞ 서면심사·서면자문 등에 응하는 경우
- ☞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 업무를 하는 경우
- ☞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
- ☞ 각종 연주회, 전시회 등에서의 연주, 공연, 전시 등 행위
- ☞ 교과서 등을 집필하는 경우
- ☞ 다수가 아닌 1:1로 진행되는 상담 또는 컨설팅의 경우

#### ■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매뉴얼

- ☞ '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'와 같이 '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·지식을 전달하는 형태'이거나 '회의 형태'이어야 함
- ☞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

#### 나) 신고대상: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

- (1)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외부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(또는 사전)에 서면 신고
- ※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은 신고의무 없음
- (2)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

#### ■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'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'의 범위

- ☞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
- ☞ 광역자치단체, 기초자치단체, 지방의회, 시도교육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·사업소 등
- ☞ 국·공립 학교(유치원), 국립대학교, 시·도립대학교 등

#### ■ 놓치기 쉬운 신고의무대상 기관(※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음)

- ☞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국가기관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  - ※ 경기도교육연구원, 학교안전공제회, 서울대학교, 한국교육과정평가원, 한국교육학술정보원(keris), 한국교육개발원, 국립대학교병원, 각종 재단법인 등
- ☞ 사립대학교, 사립 학교(유치원)